

의안번호	2210277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5. 9. 5.
추계번호	25B26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에 모욕과 관련된 분쟁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 1,500만원(연평균 1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안 제44조의10) 관련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인 증원	79	77	80	83	86	406	81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313	—	31	32	33	409	82
합 계	392	77	111	115	119	815	163

주: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인 증원 및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함(제1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에 모욕과 관련된 분쟁을 추가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등 적용함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에 모욕과 관련된 분쟁을 추가(안 제 44조의10제1항)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에 모욕과 관련된 분쟁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 업무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851건으로, 연 평균 1,600여건을 처리하였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로 2024년 기준 3,500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2] 최근 3년(2022~202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연 도	합 계	접수처리								사무처 답변 등
		소 계	조정전 합 의	조정결정	정보제공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¹⁾	
2022	1,802	551	13	0	118	285	33	26	76	1,251
2023	1,540	685	18	0	101	423	29	28	86	855
2024	1,509	632	12	0	131	294	43	71	81	877
합 계	4,851	1,868	43	0	350	1,002	105	125	243	2,983

주 1) 기타는 조정의 거부 등 건수임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 3.)

(단위: %, 천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3.8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4,883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표 3] 최근 3년(2022~202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분쟁조정부 운영비	37	36	35

주: 인건비 미포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에 모욕과 관련된 분쟁을 추가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업무가 증가할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증원(1인),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표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5명으로, 조정회의의 경우 현재 연 22~24회 개최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4~5급)의 연 인건비는 6,900만원 수준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운영 중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인 증원)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지원 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6인(팀장 1명, 연구위원 1명, 팀원 4명)이 수행 중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의 접수, 사실조사, 자료수집 및 작성 등을 위해 직원 1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²⁾³⁾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팀원)의 인건비는 6,900만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인당 약 500만원) 적용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째해인 2027년에만 발생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위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조정회의 개최 횟수(연 22~24회)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정회의 참석 등에 따라 조정위원에게 지급되는 운영비용은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하다는 의견임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직원 1인 증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공간의 경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유한 사무공간을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임

[표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인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인건비	74	77	80	83	86	401	80
자산취득비	5	—	—	—	—	5	1
합 계	79	77	80	83	86	406	81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에 모욕 관련 분쟁 조정 추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 서버 구매 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 시스템 고도화 비용 반영

- 시스템 개발비: 213백만원
- 서버(H/W) 구매(2EA): 50백만원 × 2EA = 100백만원
- 유지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에 따라 10% 적용⁴⁾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자 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⁵⁾
- 유지·관리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6]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시스템 개발비(고도화) 산출 내역서

(단위: 원)

구분	평균임금(월)	인원	개발 기간	소계
IT PM	9,145,473	1	5	45,727,365
시스템SW 기술자	6,099,042	3	5	91,485,630
IT지원 기술자	5,058,021	3	5	75,870,315
합계				213,083,310

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5)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업무에 모욕과 관련된 분쟁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억 1,500만원 (연평균 1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인 증원	79	77	80	83	86	406	81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313	—	31	32	33	409	82
합 계	392	77	111	115	119	815	163

주: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인 증원 및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인 증원 및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